

## 부 동 산 교 환 계 약 서

## 【교환부동산의 표시】

갑(000): 00시 00구 00동 000-00

대 〇〇〇m²(금 삼억원)

을(000): 00시 00구 00동 000-00

대 ○○○m²(금 이억오천만원)

- 제1조 (계약목적) 갑과 을은 위 부동산을 쌍방 합의 하에 아래와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.
- 제2조 (대금지급) 을은 위 부동산의 교환에 차액을 갑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.
  - 교환 대금:금 오천만원(50,000,000원)
  - 계 약 금: 금 오백만원(5.000.000원)은 계약시 지불하고 갑은 이를 영수함.
  - 잔 금: 금 사천오백만원(45,000,000원)은 2000년 OO월 OO일 지불한다.
- 제3조 (평가액) 교환물건에 설정된 피담보채권, 임차보증금 등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평가액에 포함한다.
- 제4조 (완전한 권리이전 의무) 교환물건에 관하여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거나 불법점유 등 하자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일까지 이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.
- 제5조 (제세공과금) 교환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금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각 부담한다. 다만, 교환물건의 인도를 지체한 경우에 발생한 것은 인도를 지체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.
- 제6조 (계약해제 사유) 교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수령한 대금은 반환한다.
- **제7조 (소유권이전시기)**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잔대금과 동시에 관할 등기소에서 한다.
- 제8조 (인도시기) 교환물건은 계약당시의 현상대로 계약기일에서 정한 인도일에 각각 인도하여야 한다.



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·날인한다.

## 2000년 0월 0일

갑	주	소					
	성 또 상	명 는 호	인	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	_	전 화 번 호	
이피	주	소					
	성 또 상	명 는 호	인	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	_	전 화 번 호	